

부 령

●**교육부령 제178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8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비위”를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를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 제1호라목 중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를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제7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제7호파목(중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

별표의 비고란 제2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별표의 비고란 제6호의2(중전의 제2호) 중 “제1호자목 및 제7호”를 “제7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성(性)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입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성 관련 비위 행위의 유형에 공연음란 행위 등을 추가하여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0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